

2015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

2015. 10. 31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

이 보고서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0. 31

- 연구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책임연구원 :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연구원 : 송석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 진수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대학원생)
  
- 자문위원 : 강석원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김태한 (서울시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약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최근희 · 송석휘 · 진수경

## 요 약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 1) 공공부문의 감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자원의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용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책무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서울시 17개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운영 면에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의무가 있음.
- 3) 이들 기관은 책임성 있고 공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감사원 등의 상급기관에서 통보한 징계조치 등을 기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경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4) 현재 상위 감사기관들은 인력·관련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통제 및 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각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의 성격이나 규모 등이 판이하여 상위기관의 감사를 통해 그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쉽지 않음.
- 5)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자체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 연구의 필요성

### 1) 내부적 요구

- 서울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휘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로, 이들 기관은 시민들의 높아지는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 2) 외부적 도전

- 한국은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 공공기관의 경영 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며 감사 업무에도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중국에 인구 천만 이상의 대도시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시 간 경쟁력 확보 경쟁은 양적 차원에서 질적 차원으로 경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향후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더 나은 대 시민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에 달려 있음.

### 3) 자체 감사가 온정주의에 치우치는 점과 감사원 및 서울시 당 상위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경감시키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4)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자체감사 실태와 감사관련 징계 규정의 운용 현황 등을 세밀히 점검한 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I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현황분석

### 1. 연구대상 투자·출연기관

- 본 연구의 투자기관은 서울시 5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SH공사임.

- 본 연구의 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의 총 10개 기관임([표 1] 참조).

## 2. 자체감사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 자체감사의 성패는 감사업무가 조직 내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그러나 순환보직제로 운영되는 전통적 인사 관행이 객관적 감사업무 수행에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상위감사의 징계요구가 통보되어도 기관 내에서 온정적으로 처벌을 감경하는 경우가 잦아 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일부 투자기관의 경우 노조가 감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경우도 있었음.

## 3.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 1) 자체감사기구 설치

- 모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 설치 조례 또는 정관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이 기관장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었음([표 3] 참조).
- 출연기관 감사담당자들은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상 위치, 감사담당자와 피감자들과의 잦은 대면접촉은 업무상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음.
- 자체감사기구가 기관 내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 감사업무와 타 업무의 병행,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임.

### 2) 자체감사기구 예산

- 서울시 투자기관의 2015년도 자체감사 예산은 5개 기관 평균 1억 4,158만원임.

- 출연기관의 경우 대형 기관인 서울의료원이 250만원, 서울산업진흥원이 310만원, 세종문화화관이 1,100만원을 배정한 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감사실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기관의 운영경비 중에서 활용하고 있었음.

### 3) 자체감사 인력

- 공감법 제5조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감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감사원 권고 적정기준은 기관 현원의 0.8%임.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우 자체감사기구를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기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인원 규모는 감사원이 제시하는 적정규모 수준의 50% 안팎으로 나타남.
- 출연기관의 경우 대형기관인 서울의료원조차 감사인원 규모가 감사원이 제시하는 적정규모 수준의 35% 수준에 불과함. 소규모 기관은 더욱 열악하여 감사업무 담당자가 1~2명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표 4) 참조).

### 4) 감사기구 장의 임용

- 감사책임자는 타 부서에 소속됨 없이 기관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관 등에 의해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5개 투자기관의 경우 감사책임자를 상임감사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음.
- 출연기관은 감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거나(신용보증),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산업진흥, 문화재단, 세종문화, 디자인).



## 5) 감사담당자의 임용

-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 내 업무에 대한 사전숙지가 필요하므로, 대개 인사규정이나 감사규정 등에서 3년 이상의 타 부처 근무 경력을 요구하거나 회계·기술직 업무에 일정기간의 자격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파견공무원으로 감사실장을 보하고 있는 일부 신생 소규모 출연기관의 경우, 1년을 기한으로 매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감사담당자의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2년 이내의 인력이 전체 인력의 50% 정도를 차지. 소규모 기관의 경우 감사업무 모든 감사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발견되었음.
- 이러한 현실과 달리, 감사담당자들은 감사업무를 숙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을 3~5년으로 보고 있었으며, 특히 대규모 기관들의 경우 4년 이상이라고 대답하였음.

## 6) 감사담당자의 교육

- 감사직무 교육은 청렴연수원,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과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 교육의 내용이 매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이 현장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 6, 7] 참조).

## 7) 감사담당자의 인센티브

- 몇몇 기관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3년 이상의 근속보장, 감사담당자 근무평가 우대, 3년 이후 전보시 본인의 희망 우선 고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표 8] 참조).

- 다만 인센티브제가 있는 경우에도 감사담당자들은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여, 그 작동 여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4. 자체감사 성과 현황

##### 1) 감사결과의 공개

- 자체감사 및 상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전문 또는 요약 공개되고 있음.
- 다만 전문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민감한 내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처분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2) 재무상 조치 관련

- 관련 처분요구는 거의 모든 경우 처분내용대로 이행되고 있었음(표 9).

##### 3) 신분상 조치 관련

- 기관 내 상벌 및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됨(표 10) 참조).

#### 5. 자체감사 규정 분석

##### 1)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기본법규 및 지도·감독 체계

- 서울시는 「공공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공감법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출연기관의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음.

#####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규정 정비 현황

-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의 2013년 8월 규정 설치 현황 조사 이후,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감사규정 개정지침 시달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음.

- 2015년 8월 현재 자체감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의 미비로 자체감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규정 정비 현황([표 11] 참조)

- ① 징계기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미흡한 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
- ②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모든 기관에서 충족)
- ③ 징계의 감경규정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미흡한 기관 : 신용보증재단)
- ④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미흡한 기관 : 신용보증재단)
- ⑤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 「부패방지법」 제82조  
(미흡한 기관 : 신용보증재단, 시설관리공단)
- ⑥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모든 기관에서 충족)
- ⑦ 징계시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미흡한 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 ⑧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징계시효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 지침」(미흡한 기관 :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 ⑨ 인사(상벌) 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참석 및 외부위원 자격 기준  
(미흡한 기관 : 서울메트로, 디자인재단)
- ⑩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모든 기관에서 충족)
- ⑪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 「서울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미흡한 기관 :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 ⑫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미흡한 기관 :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 ⑬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미흡한 기관 :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 3) 자체감사의 독립성,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인의 처우 관련 규정

- 감사의 독립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으며, 두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표 12] 참조).
- 감사인의 전문성 관련 규정은 ① 자격규정, ② 교육훈련규정, ③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참여규정 등이 있었음. 감사인의 자격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의 제정 현황은 미미한 수준임([표 13] 참조).
- 감사담당자의 처우 관련 규정은 ① 신분상 불리한 처분 금지, ② 별도 근무평점기준 운영 등 우대, ③ 근속 후 희망부서로의 전보, ④ 별도 수당지급 등이 있었으며, 기관별로 그 제정 여부와 정도가 상이하였음.

##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

- 법·제도적 기반정비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됨. 서울시 감사관실의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외부평가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

- 감사 임용현황 관련, 감사경력 소유자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당활동 경력자나 상위단체 공직자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음. 감사실장의 경우 내부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임용되고 있음.
- 자체감사 업무는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업무 이외에 정책적 업무인 청렴의무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자체감사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음.
- 자체감사 기구는 독립적인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책임자 및 직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운영상 독립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태.

- 상위감사 결과 징계유지율은 2013년 이후 많은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여전히 상위감사 결과에 대한 양정요구를 감경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표 14] 참조).

## 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 법·제도적 기반정비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투자·출연기관의 규모나 인식정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감사 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과정에서 인사권자의 의지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또한 자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의 임용이 각 기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달려 있어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업무 이외에 정책적 업무인 청렴의무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자체감사업무와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자체감사업무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음.
-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용되기 보다는 정치활동을 하거나 상위단체의 퇴직자나 전보자가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한 업무 상 독립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담당 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가 감사담당 직원들의 순환보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감사역량 개발도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교육훈련에 의존하고 있음.
- 상위감사 징계요구에 대한 기관 내 감경에 대해, 감사담당자들은 상위감사기관의 적발위주의 무리한 감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III. 국내·외 자체감사제도 및 운영사례 (본문 참조)

### IV.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1) 자체감사제도 규정의 내실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각 기관별로 항목별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을 보다 내실화하여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징계규정이나 징계시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디자인재단 등은 징계규정,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지침, 징계의결정족수 관리 규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관련 규정을 보다 내실 있게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2년으로 하자는 노동조합의 의견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반 3년, 금품관련 5년으로 징계시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에 따른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자체감사제도 관련 조례제정

- 자체감사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자체감사제도 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별첨 1 참조).

##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상임감사 임용방법을 개방형 임용을 통한 공개경쟁 채용 의무제로 강화하고, 감사실장의 임용방법도 내부임용에서 내·외부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의 방향 및 운영방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기법이나 인력운영 등에 외부의 전문가나 민간경력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체감사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인력이 현재 170여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인력을 적극 활용, 중·장기적으로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제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감사인력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보수 및 인센티브 등 우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감사관실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부터 보직관리 및 승진 등 감사인력 간 순환이 가능하도록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자체감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는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상위감사기관의 징계 유지율 유지방안

- 감사결과에 대해 양정을 심사,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합법성 중심의 적발위주의 상위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컨설팅이나 예방감사로 전환함으로써, 자체감사가 기관의 자율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대응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5.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무엇보다 자체감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자신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자체감사제도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서울시 감사관실 및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학습기회 마련과 함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상시적인 자체감사와 함께 자체감사를 위한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 자체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3
4. 연구방법 .....	5
I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현황분석 .....	6
1. 투자·출연기관의 의의 .....	6
2. 자체감사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	7
3.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	9
1) 자체감사기구 설치 .....	9
2) 자체감사기구 예산 .....	10
3) 감사인력 .....	11
4) 감사기구 장의 임용 .....	12
5) 감사담당자의 임용 .....	13
6) 감사담당자의 교육 .....	15
7) 감사담당자의 인센티브 .....	17
8) 자체감사조직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요약 .....	19
4. 자체감사 성과 현황 .....	21
1) 감사결과의 공개 .....	21
2) 재무상 조치 관련 .....	21

3) 신분상 조치 관련 .....	22
<b>5. 자체감사 규정 분석 .....</b>	<b>24</b>
1)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기본법규 및 지도·감독 체계 .....	24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규정 정비 현황 .....	26
3) 자체감사의 독립성,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인의 처우 관련 규정 .....	36
4) 자체감사 규정 분석 요약 .....	39
<b>6.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b>	<b>40</b>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 .....	40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 .....	40
<b>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b>	<b>43</b>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	43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43
<b>III. 국내·외 자체감사제도 및 운영사례 .....</b>	<b>45</b>
<b>1. 국내 자체감사제도 사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b>	<b>45</b>
1) 자체감사기구 조직, 인력, 운영 .....	45
2) 자체감사 규정 점검 .....	47
3) 운영상 벤치마킹 사례 .....	50
<b>2. 해외 자체감사제도 사례 .....</b>	<b>53</b>
1) 해외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	53
2) 미국 공공부문 감사체계 .....	59
3) 미국 지방정부(City) 감사체계 : 뉴욕 시의 경우 .....	60
<b>3. 사례연구의 시사점 .....</b>	<b>62</b>
1) 자체감사기구 설치 규정 의무화 .....	62
2) 자체감사기구의 지배구조 .....	62
3)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명방식 .....	63
4) 자체감사 직원의 역량강화 .....	63

IV.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64
1. 단기안 .....	64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규정의 내실화 .....	64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66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제고 .....	68
4) 상위감사기관의 징계 유지율 유지방안 .....	69
5)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70
2. 중·장기안 .....	71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71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72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강화 .....	72
4)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73
참고문헌 .....	75
별첨 1 .....	77

## 표, 그림 목차

[표 1] 연구대상 15개 투자·출연기관 .....	4
[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차이 .....	7
[표 3] 자체감사기구 설치 현황 .....	10
[표 4]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규모 .....	12
[표 5] 감사담당자의 감사기구 근무경력 현황 .....	15
[표 6] 기관별 감사담당자 교육 내용 및 방법 현황 .....	16
[표 7] 기관별 감사담당자 교육 내용 및 주체 현황 .....	17
[표 8] 감사담당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현황 .....	18
[표 9] 서울시 투자기관 재정상 조치 상황 .....	22
[표 1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신분상 조치 현황 .....	23
[표 11] 자체감사 규정 세부사항 .....	35
[표 12] 기관별 감사규정상 감사의 독립성 관련 규정 현황 .....	37
[표 13] 기관별 감사규정상 감사의 전문성 관련 규정 현황 .....	38
[표 14] 징계유지율 현황 .....	42
[표 15]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 구성 및 비율 .....	54
[표 16] 감사담당자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	56
[표 17] 자체감사 활동 유형 .....	57
[표 18] 합법성 감사 수행 현황 .....	57
[표 19] 성과감사 수행 현황 .....	57
[표 20] 자체감사 성과측정 방법 .....	58
[표 21] 서울시 투자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규정 내실화 방안 .....	65
[표 22] 서울시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규정 내실화 방안 .....	66
[표 23] 자체감사제도 내실화 방안 : 단기안 .....	71
[표 24] 자체감사제도 내실화 방안 : 중·장기안 .....	73
[그림 1]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	53
[그림 2] 감사담당자 등의 감사경력 현황 .....	55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 1) 공공부문의 감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자원이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책무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 2) 서울특별시가 투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17개의 공공기관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운영 면에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
- 3) 이들 기관은 책임성 있고 공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와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에서 통보한 징계조치 등을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경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4) 현재 상위 감사기관들은 인력이나 관련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 및 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은 업무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위기관의 감사를 통해 그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5) 이에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자체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 연구의 필요성

### 1) 내부적 요구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써, 1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높아진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선진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서 조직운영상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에 대한 높아지는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서울시를 경쟁력 있는 세계적 대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2) 외부적 도전

-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하겠음. 동아시아는 중국의 발전으로 여러 개의 천만 이상의 대도시가 성장하여 서울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양적인 경쟁에서 질적인 경쟁으로 무대가 변화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음. 새로운 도시 공공기관의 경영 모델이 요구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어서, 감사업무도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어떤 도시가 더 나은 대 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른 도시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3)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자체 감사 실태와 감사 관련 징계 규정의 운용 현황 등을 세밀히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4) 특히 감사원 및 서울시 당 상위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온정적으로 경감시키는 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 기구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 2) 연구의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함.
- 기준년도는 2015년이 됨.
- 연구대상 기간은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로 2012년 1월 이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3년으로 함.

##### 나.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인력 현황 : 독립기관화, 인력규모, 근무경력, 전문교육, 인센티브 등
  - 각 기관 감사관련 기준 및 규정 현황 조사: 감사결과 공개여부, 상위감사결과 징계 유지율,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 자체 감사 기구의 감사 분석
  - 감사 및 처벌관련 규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여부
  - 임직원의 공직관 관련 세부 기준 조사

자체 감사 관련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자체감사제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대안 제시

다. 대상적 범위 : 15개 투자·출연기관(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제외)

구분	대상기관
투자기관 (5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SH공사
출연기관 (10개)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표 1] 연구대상 15개 투자·출연기관



#### 4.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각종 보고서 및 논문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 선언문

사례연구 : 국내(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외(미국 지방정부(뉴욕시))

심층인터뷰 : 19명

- 기간 : 2015년 8월 19일 ~ 2015년 9월 23일
- 대상기관 : 15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15명)
- 기타 : 전직 서울시 감사관(1명), 전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1명), 전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1명), 현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1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대학교수 (3명)

## I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현황분석

### 1. 투자·출연기관의 의의

-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투자기관은 서울시 5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SH공사를 의미함.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또는 100%)이며,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sup>1)</sup>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음
-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대부분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관련 사업,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로도 충분하고(10% 이상) 별도의 지정이 필요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대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과 구분됨.
- 현재 서울시 출자기관은 서울관광마케팅의 1개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예로는 (주)킨텍스(경기도, 고양시, KOTRA),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특별자치도), (주)신안그린유통(신안군) 등이 있음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구분		출자비율	적용법률	소속
지방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상수도등)	100%	「지방공기업법」	지자체 소속
	지방공단(환경공단등)	100%		민간출자 불허
	지방공사(도시공사등)	50%이상		지방공사 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10%이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100%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독립법인 형태

[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차이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조례 등에 따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문화·예술진흥, 교육·장학사업, 의료사업, 복지사업, 지역 현안조사·연구 등 다양한 설립목적을 갖고 있음.
-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의 총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2. 자체감사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정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공공 부문의 예산규모가 증대되면서 부당 행위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감사는 공공부문 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과관리와 업무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각종 공공기관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통제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상 부실문제, 방만한 경영, 각종 비리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내·외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여러 가지 법률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인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감사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국회, 감사원, 상급행정기관과 같은 기관에 의해 2중, 3중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자체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자체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외부감사가 집행되어 오고 있음.
- 2013년 3월 23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11690호가 제정됨. 이 법의 도입은 공공기관의 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는 있으나, 그 감사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등과 같은 상위기관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피감인에게 징계요구가 통보된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처벌을 지나치게 감경해 주는 온정주의적 경향의 조치도 발생하고 있어서 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자체감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감사업무가 조직 내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냐의 문제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이 시행하는 감사 활동에 대한 신뢰성은 바로 독자적 감사가 가능하다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
- 정부나 자치단체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자체감사의 경우 소속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적 측면에서 독립성 확보가 관건임.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관리가 순환보직제도로 되어 있다는 상황이 인적, 조직적 독립성을 담보한 객관적 감사업무 수행에 가장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정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역시 중복 감사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자

체 감사의 경우 역시 조직으로 부터의 독립성 담보 문제가 절실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조직 구성원이 수 백 또는 수 천 명에 달하는 대형 기관과 수십 명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작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이 차이가 있음. 일부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노조가 감사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를 시도하는 등 자체감사에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하겠음.

### 3.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 1) 자체감사기구 설치

- 모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 설치 조례 또는 정관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을 명시하고 있음.
-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기관의 2/3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이 기관장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었음.
  - 5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중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은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었음.
  - 서울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시립교향악단의 3곳은 감사기구를 하부조직(기획조정본부,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 등) 내에 설치하고 있었음(장학재단은 미설치).
- 출연기관의 감사담당자들은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상 위치뿐만 아니라, 기관과 자체감사 기구의 규모가 협소하여 감사담당자와 피감 대상자들과의 대면접촉이 잦은 수밖에 없는 사정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음(서울연구원, 여성가족재단). 감사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기

타 업무로 인한 피로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구분	투자기관					출연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	SH	의료원	전기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세종문화회관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
자체감사기구 독립설치 여부	○	○	○	○	○	○	×	○	○	○	×	○	○	×	○
상임감사 여부	○	○	○	×	○	×	×	×	×	×	×	×	×	×	×
개방형감사여부	○	○	○	×	○	△	×	×	×	×	△	×	×	×	×
감사업무 전담 여부	○	○	○	○	○	○	×	○	○	○	×	○	○	○	○

[표 3] 자체감사기구 설치 현황

## 2) 자체감사기구 예산

□ 서울시 투자기관의 2015년도 자체감사 예산은 5개 기관 평균 1억 4,158만원임.

- 농수산식품공사(5.7%)와 서울메트로(1.8%)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철도공사(-9.7%), 시설관리공단(-13.3%), SH공사(-6.7%)는 하락하였음.

□ 집행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는(전년 대비 11.8% 증가) 교육훈련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외부위탁교육 집행이 25.4% 감소하였음.

- SH공사의 경우에는 내부감사 지원(-11.1%) 및 외부감사활동 지원(-15.9%)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의료원이 250만원, 산업진흥원이 310만원, 세종문화회관이 1,100만원을 배정하고 있었음.

- 복지재단은 2014년도에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현재 감사실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기존의 전략경영본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 그 외의 출연기관들은 감사실에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기관의 운영경비(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중에서 활용하고 있었음.
- 서울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은 별도 감사실을 갖고 있지 않아 감사실 예산으로 배정할 수 없는 상황임.
-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정원 24명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부감사를 외부의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마저 2015년도에 백만원을 배정하여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3) 감사인력

- 공감법 제5조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대상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감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감사원 권고 적정기준 0.8%).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규모는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현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8명(메트로)에서 1명(시립교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음.
  - 투자기관의 경우 현원 규모가 서울메트로의 9,150여 명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8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자체감사기구를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기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단,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인원 규모가 감사원이 제시하는 적정 규모 수준의 50% 안팎으로 나타남.
  -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 신용보증재단(2,200명), 서울의료원(1,081명) 같은 대형 기관부터 자원봉사센터(24명), 장학재단(4명) 등 규모가 협소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였음.
  -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감사인원 규모가 감사원이 제시하는 적정규모 수준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자체감사기구 인력충원을 통한 기능 강화 필요

성 있음.

□ 현원 2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경우 감사원 적정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사업무 담당자가 1~2명 정도일 수밖에 없어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업무 처리를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청렴지표관리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이를 자체감사를 위한 인력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관 내 회의론이 있었음.
-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도 대형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직의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음.

구분	투자기관					출연기관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	SH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에너지	세종문화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	
기관 현원(A)	9,150	6,500	2,800	280	710	1,080	280	230	500	448	100	150	134	160	160	
감사인원 현원(B)	38	25	38	6	18	3	2	2	4	3	4	3	2	1	2	
감사인력 비중(A/B)	0.4	0.4	1.4	2.1	2.5	0.3	0.7	0.9	0.8	0.7	4.0	2.0	1.3	0.6	1.3	
감사원 기준*(C)	73	52	22	2	6	9	2	2	4	4	1	1	1	1	1	
총원율(B/C)	51.9	48.1	169.6	267.9	316.9	34.7	89.3	108.7	100.0	83.7	500.0	250.0	186.6	100.0	156.3	

[표 4]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규모

(명, %)

주: 감사원 기준은 현원의 0.8%임(「감사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2011.05)

#### 4) 감사기구 장의 임용

□ 감사책임자의 위상, 임용방식, 신분보장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감사책임자의 직위가 수감기관의 장보다 낮은 경우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감사책임자의 직급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 영향을 미침.

- 서울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책임자는 타 부서에 소속됨 없이 기관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음. 기관의 정관 등은 감사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 책임자의 임용방식을 살펴보면 5개 투자기관의 경우 감사책임자를 상임 감사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었음.

- 5개 투자기관은 기관별 정관에 감사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방형 상임감사의 임명은 서울시, 서울시 의회, 해당 기관의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의 포함.

□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지 않는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임명하거나(신용보증),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었음(산업진흥, 문화재단, 세종문화, 디자인).

□ 출연기관의 비상임감사의 직업은 공인회계사가 7인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공무원(전·현직, 4인), 변호사(미국변호사 포함 3인), 기타(1인)임.

□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감사책임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음.

#### 5) 감사담당자의 임용

□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은 인사규정이나 감사규정 등에서 3년 이상의 타 부처 근무 경력을 요구하거나 회계·기술직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자격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는 자체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 내 업무에 대한 사전숙지가 필요한 특성에 기인한 것임.

□ 일부 신생 소규모 출연기관은 서울시의 파견공무원으로 감사실장을 보하는

경우가 있었음(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문화재단(현재 공석)).

-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파견하는 경우, 기한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의 감사기구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재직기간 2년 이내의 인력이 전체 인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소규모 기관의 경우 감사업무 모든 감사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발견되었음(산업진흥).
-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사업무가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자들은 감사실무자들이 감사업무를 숙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을 3~5년으로 보고 있었으며, 특히 대규모 기관들의 경우 4년 이상이라고 대답하여 감사업무 숙지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있었음.

기관명		감사인원 수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평균 근무경력
투자 기관	메트로	38	21	1	7	5	4	1.2
	도시철도	25	7	5	1	4	8	3.3
	시설관리	38	21	1	8	4	4	2.2
	농수산	6	2	2	1	0	1	2.1
	SH	18	6	4	2	2	4	1.6
출연 기관	의료원	3	2	0	0	0	1	0.4
	연구원	2	1	0	0	1	0	2.0
	산업진흥	2	2	0	0	0	0	0.3
	신용보증	4	1	3	0	0	0	1.2
	세종문화	3	2	1	0	0	0	0.4
	여성가족	4	1	1	0	1	1	2.1
	복지재단	3	2	1	0	0	0	2.2
	문화재단	2	1	0	0	0	1	2.1
	시립교향	1	0	0	0	0	1	5.1
	디자인	2	0	0	2	0	0	2.2

[표 5] 감사담당자의 감사기구 근무경력 현황

주: 평균근무경력 = 개인별 감사부서 총 근무월수의 합을 기관별 감사인원 수로 나눈 것임.

## 6) 감사담당자의 교육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0시간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관별 평가지표에 반영한 이후에는 기관별로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직무 교육은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음. 특히 감사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과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교육의 내용이 매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2년 이상 경력의 감사담당자들은

이미 수강한 교육내용을 다시 수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이 현장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수의 기관은 민간자격증인 내부통제평가사(ICA : Internal Control Assessment) 자격 취득 지원, 민간 회계법인의 내부감사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 자체 워크샵 개최 등 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음(시설공단, 여성가족 등).

구분		감사교육 시간	청렴교육 시간	총 교육시간 중 감사교육시간 비중(%)	온라인 교육시간	오프라인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중 오프라인교육 비중(%)
투자기관	메트로	2,275(60.0)	2,419(63.7)	48.5	2,647(70.0)	2,047(53.9)	43.6
	도시철도	1,853(74.1)	73(2.9)	96.2	522(20.9)	1,404(56.2)	72.9
	시설관리	877(23.1)	749(19.7)	53.9	829(21.8)	797(21.0)	49.0
	농수산	356(59.3)	179(29.8)	66.5	112(18.7)	423(70.5)	79.1
	SH	88(4.9)	19(1.1)	82.2	26(1.4)	81(4.5)	75.7
출연기관	의료원	3(1)	24(8)	11.1	16(5.3)	11(3.7)	40.7
	연구원	0	42(21)	0.0	42(21)	0	0.0
	산업진흥	34(17)	12(6)	73.9	8(4)	38(19)	82.6
	신용보증	85(21.3)	100(25)	45.9	148(37)	37(9.3)	20.0
	세종문화	3(1)	12(4)	20.0	0	15(5)	100.0
	여성가족	314(78.5)	148(37)	68.0	401(100.3)	61(15.3)	13.2
	복지재단	180(60)	27(9)	87.0	0	207(69)	100.0
	문화재단	64(32)	12(6)	84.2	32(16)	44(22)	57.9
	시립교향	0(0)	181(181)	0.0	23(23)	158(158)	87.3
	디자인	20(10)	0	100.0	0	20(10)	100.0

[표 6] 기관별 감사담당자 교육 내용 및 방법 현황

주: ( )는 감사인력 1인당 평균 교육시간(시간)

구분	감사 인력	총 이수 시간	1인당 평균 이수 시간	자체				서울시				감사원, 감사교육원				기타				
				감사 관련		청렴 관련		감사 관련		청렴 관련		감사 관련		청렴 관련		감사 관련		청렴 관련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온 라인	오프 라인	
투자기관	메트로	38	4,694	123.5	97	468	1807	541	743	967		71								
	도시철도	25	1,926	77.0		331		3		10		14	522	829				161	56	
	시설관리	18	1,626	90.3	1	2		87.5		68		69	502					304	326	66.5
	농수산	6	535	89.2				66				3		340				16	96	14
	SH	18	107	5.9	16	23		16	1	20		1	8	8				1	11	2
출연기관	의료원	3	27	9.0			16	6										3	2	
	연구원	2	42	21.0										19					23	
	산업진흥	2	46	23.0	4	2	4	4		4		4						24		
	신용보증	4	185	46.3				20	26		20		42					17	60	
	세종문화	3	15	5.0						3		10							2	
	여성가족	4	462	115.5				39		2	18	20	54		67		258		4	
	복지재단	4	207	51.8														180	27	
	문화재단	2	76	38.0	20	4					10							40	2	
	시립교향	1	181	181.0									26		23	35				97
	디자인	2	20	10.0															20	

[표 7] 기관별 감사담당자 교육 내용 및 주체 현황

주: 기타는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교육을 제외한 정부기관 교육(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 및 사설 교육 포함

### 7) 감사담당자의 인센티브

□ 문제점을 인식한 몇몇 기관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3년 이상의 근속을 보장하고 감사담당자의 근무평가를 우대하거나 3년 이후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음.

- 감사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근무평가 우대(47%)와 전보시 희망보직제(68%)의 비중이 높았음.
- 투자기관인 서울메트로,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는 감사수당으로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서울문화재단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출연기관은 동일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투자기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

- 아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출연기관도 있었음(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재단)
- 인센티브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출시 희망보직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감사인력들은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함.

기관명		근무평가 우대	근속가점	다면평가 불이익 해소	전출시 희망보직제	감사수당
투자 기관	메트로	○	X	○	○	○
	도시철도	○	X	X	○	X
	시설관리	○	X	X	○	X
	농수산	△	○	△	○	○
	SH	○	X	○	○	○
출연 기관	의료원	X	X	X	○	○
	연구원	X	X	X	X	X
	산업진흥	X	X	△	○	X
	신용보증	X	X	X	X	X
	세종문화	X	X	△	○	X
	여성가족	X	X	X	○	X
	복지재단	X	X	X	○	X
	문화재단	○	X	○	X	○
	시립교향	X	X	X	○	X
	디자인	X	X	X	X	X

[표 8] 감사담당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현황

주: 평균으로 부여한 경우 △로 표시

## 8) 자체감사조직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요약

### □ 자체감사기구의 조직도 내 편제수준 관련

- 독립조직이 아니라 기관 내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감사담당자는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기관 내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 감사업무와 타 업무의 병행, 잦은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규모 및 예산 관련

- 5개 투자기관의 경우 감사원 적정인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외).
- 12개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의료원(34.7%)을 제외하면 감사원 적정인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
- 다만 출연기관의 경우 자체감사를 위한 독립기구 또는 담당 조직 자체의 규모가 1~4명 내외로 협소하므로 업무독립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적정인원 기준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출연기관의 경우 독자적인 감사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독자적 예산 확보가 감사실 (감사실이 없는 경우 내부감사)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감사 수행을 위한 독자적 예산 배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감사담당자의 자격, 직무교육, 인센티브 관련

- 5개 투자기관처럼 자체감사기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회계·법무 등 자체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거나 내부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함.
- 반면 12개 출연기관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잦은 순환보직, 기피업무 등의 이유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감사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감사교육원, 청렴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감사교육이 매우 유용하다고 답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담당 경력이 1~2년에 불과한 데 기인함. 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감사담당자들은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 매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교육내용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역량 있는 인재 유인과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운용은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 특히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재단),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자체감사 성과 현황

### 1) 감사결과의 공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및 상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전문 또는 요약 공개되고 있음.
- 다만 전문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이 지각하기에 민감한 내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처분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관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였음.
- 기관 내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려는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 재무상 조치 관련

- 5개 투자기관은 2013년 1월부터 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98건의 재정상 조치 처분요구를 하였음.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이후 미집행 항목이 없으며, 농수산공사는 2013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1건, SH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 1건이 미집행되었음.
- 이 2건을 제외한 요구에 대한 환수 및 변상조치가 이루어져(2015년도가 아직 경과하지 않아 환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수는 제외) 건수 기준으로 99.3%에 해당하는 약 522억 2천만원에 대한 환수 또는 변상조치가 완료되었음(표 9).
- 10개 출연기관의 경우 2013년에 자체감사 결과 일부 금액만 환수한 1건과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중 중 4건이 집행되지 않은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하면 자체 및 상위기관의 요구는 모두 집행되었음(디자인재단은 자료 미비로 확인할 수 없었음).

	합계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	농수산	SH
지적건수	298	28	131	78	40	21
시정건수	296	28	131	78	39	20
액수(천원)	52,219,543	39,706,030	330,505	378,306	1,155,812	10,648,890
시정률 (%, 건수 기준)	99.3	100.0	100.0	100.0	97.5	95.2

[표 9] 서울시 투자기관 재정상 조치 상황(2013~2015.8)

### 3) 신분상 조치 관련

- 신분상 조치는 징계·경고·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5개 투자기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평균 286건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총 인원 중 징계조치가 내려진 인원의 비중은 평균 13.74%로 나타났다(농수산식품공사 자료 미비하여 제외).
- 서울메트로(21.2%)와 도시철도공사(18.9%)의 경우 투자기관 평균보다 징계조치 비중이 높았던 반면, SH공사는 징계조치 비율이 2.3%에 불과하였음.
- 10개 출연기관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평균 114건의 조치가 내려졌음.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총 인원 중 징계조치가 내려진 인원의 비중은 11.1%로 나타나(여성가족재단 자료 미비하여 제외) 투자기관의 징계조치 비중이 더 높았음.
- 서울산업진흥원(19.4%), 세종문화회관(27.4%), 디자인재단(14.3%)은 출연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징계조치 실적을 보인 반면, 서울연구원(0.0%), 시립교향악단(0.05), 신용보증재단(3.9%)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신용보증재단은 총 신분상 조치 건수가 127건으로 타 기관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재정상 환수·변상조치나, 행정상 시정·경고조치 등이 내려졌음에도 신분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어도 사후 상벌 및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감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음.

구분	합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주의	기관 현원	감사 인력 현원	전체 신분 조치 대비 인원 비율	감사인원 당 징계 건수	
투자기관	메트로	146	5	26	115	9,150	38	21.23	0.8
	도시철도	286	15	39	232	6,500	25	18.88	2.2
	시설공단	465	16	51	398	2,800	38	14.41	1.8
	농수산					280	6		
	SH	246	3	2	241	710	18	2.03	0.3
	평균							13.74	1.3
출연기관	의료원	46	1	3	42	1,080	3	8.70	1.3
	연구원	5	0	0	5	280	2	0.00	0.0
	산업진흥	36	0	7	29	230	2	19.44	3.5
	신용보증	127	2	3	122	500	4	3.94	1.3
	세종문화	62	8	9	45	448	3	27.42	5.7
	여성가족					100	4		
	복지재단	10	0	1	9	150	3	10.00	0.3
	문화재단	20	0	2	18	134	2	10.00	1.0
	시립교향	22	0	0	22	160	1	0.00	0.0
	디자인	14	2	0	12	160	2	14.29	1.0
평균							11.11	1.7	

[표 1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신분상 조치 현황(2013~2015.8)

(단위: 명, %)

## 5. 자체감사 규정 분석

### 1)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기본법규 및 지도·감독 체계

□ 자체감사와 관련된 주요 기준으로는 「공공감사기준<sup>2)</sup>」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등이 있음.

- 이 중 공공감사기준은 감사원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에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에 적용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됨.

- 각 심사기준은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차별적 특징을 보이거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감사기준이 갖는 기본 맥락은 대체로 유사함. 특히 개별 조항 단위로 살펴보면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공감법의 적용대상 중 공공기관은 공감법 제4조 및 공감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함. 서울시 투자기관인 지방공기업 5곳은 이 규정상의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의 직접 적용을 받음.

□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우 공감법에 기재된 적용대상 기관은 아니나, 「감사원법」 제23조 각호의 내용<sup>3)</sup>에 해당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 「지

2) 「공공감사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의 권고와 「감사원법」 제30조 2항 및 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8일 제정되었음.

3) 「감사원법」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예정하고 있음.<sup>4)</sup>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공감법 및 지방공기업의 규율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출연기관의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음.

-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책임자의 임면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구성원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2014. 9),

- 서울시 역시 이에 따라 조례 및 기관별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지도하고 있음.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전문개정 2009.1.30.]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 (지도,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 (검사, 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규정 정비 현황

-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의 2013년 8월 규정 설치 현황 조사 이후,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감사규정 개정지침 시달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음.
- 2015년 8월 현재, 자체감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 (여성재단 자료 미비) 감사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규정의 미비로 자체감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음.

### ① 징계기준 규정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 1】 공무원 징계기준은 비위의 유형을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업무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한 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적용 가능한 징계 종류를 적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1. 복무 및 품위, 2. 청렴의무, 3. 문서 및 관인 관리,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5. 공사,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7. 소송업무 등으로 구분한 후, 징계기준을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등으로 적시하여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공무원 징계기준보다 비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더욱 세분화·객관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의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공무원 징계기준과 함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징계 등을 의결하라는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이에 준하여 서울시 징계기준의 누락 없이 기관별 징계 기준을 제정·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일부 비위 유형에 대해서만 징계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제시하여 개별 사유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었음.

-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음.
- 다만, 노조 차원에서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의 제·개정은 노사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 규정이 아직 미흡하거나 제정되지 않은 경우(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었음. 또한 동일 비위유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비해 가벼운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음(서울메트로).
  - 가령,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0-3】 1.6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서울시는 징계수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는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별표 10-2】 공금횡령 및 금품, 향응수수 등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만 두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징계기준,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의 변경을 위한 노사합의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 ②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현재 모든 기관에서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의 감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③ 징계의 감경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

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감경 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정 기준에 따라 감경하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위의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시는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이에 준하여 기관별 징계 기준을 제정·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관련 규정 제정 수준이 미비하여 징계효과가 반감되고 있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불이익변경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지연으로 규정 개정이 보류된 상태임.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의 감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기관장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중감경이라는 지적이 있어 2015년 8월 27일부로 기관장 직권 징계감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음.

#### ④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승진 및 승급에서 각각 1년 6개월(강등, 정직), 1년(감봉), 6개월(견책)간 제외되며, 보수도 징계처분 기간 중 각각 3분의 2(강등, 정직), 3분의 1(감봉)을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관련 비리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에서 각각 3개월을 가산하여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효과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서울시는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도 서울시 기준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관련 규정 제정 수준이 미비하여 징계효과가 반감되고 있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불이익변경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지연으로 규정 개정이 보류된 상태임.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기관장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중감경이라는 지적이 있어 2015년 8월 27일부로 기관장 직권 징계감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음.

#### ⑤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82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당연퇴직, 파면, 해임 포함)된 자에 대해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도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된 자에 한해 일정 기간(3~5년)동안만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었을 뿐,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무원이나 타 공공기관 직원의 (재)취업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부패행위로 인해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한 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산하 기관에 취업할 우려가 있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불이익변경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지연으로 관련규정 개정이 보류된 상태임.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청렴의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음. 그 내용 역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단내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음.

- 나머지 기관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규제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⑥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규정」은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이 신청일 당일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단, 1, 3, 4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함)”고 규정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본 규정을 유지할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11.22. 부로 본 규정을 삭제하였음. (① 공무원과 달리 파면 처분이 없어 퇴직급여액의 변동이 없음. ② 감사의 기능과 역할의 제한으로 사법기관과 같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 조치만 취함으로써, 조사 종료 시까지 급여가 지급되어 예산낭비 초래)
-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⑦ 징계시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요구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당초 일반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2년이었으나,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2년 6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임.
- 이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너무 짧아 적발하더라도 제대로 처벌

하지 못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의 기준에 준하여 징계시효를 제정·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종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있거나 심지어 금품수수 등의 징계시효도 3년으로 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우 일반비위의 징계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어 있지 않았음.
- 이들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시효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었음.

#### ⑧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징계시효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 지침」(이하 “징계시효경과자 관리 지침”)에 의하면 징계시효경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훈계처분 등을 할 때 비위 정도에 따라 중징계 사항 및 경징계 사항 등으로 처분 대장에 등급화하여 기록관리 ☞ 인사·감사부서의 장이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징계시효 경과 시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문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한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서는 서울시는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도 관련지침을 미련하도록 시달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투자·출연기관은 징계시효경과자 관리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징계시효 경과자를 문책하는 데 있어 비위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은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의 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징계시효 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⑨ 인사(상벌) 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참석 및 외부위원 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사위원회가 기관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징계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투자·출연기관은 인사(상벌) 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참여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인사 1~2명의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외부위원 자격조건 및 제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인사(상벌)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서울메트로, 서울디자인재단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외부위원 과반 이상의 의무참석 규정이 없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외부위원 자격조건도 “인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중징계 심의의 경우에 한해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 서울디자인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징계시효 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⑩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부서의 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관장 및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에게 범죄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를 고발하여야 함.
- 현재 모든 기관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을 두고 있음.

⑪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5조, 제5조의 2, 제5조의3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상, 내부고발자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사실상 두지 않거나 매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디자인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음.

⑫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 3일 전에 출석 통지를 보내며,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진술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고 있음.
- 이는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이 보다 충분히 보장되도록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두고 있어 규정의 구체성 및 실행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디자인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의 관련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⑬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하는 징계의결정족수 규정이 있음.

⑭ 임직원 행동강령

- 모든 기관에 갖추어져 있음

[표 11] 자체감사 규정 세부사항

기관명	투자기관												출연기관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		SH공사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		신용보증		세종문화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재단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변경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등 중 징계 규정	X	○	○	○	X	○	○	○	○	○	○	○	X	○	○	○	X	X	X	○	○			X	○	X	○	X	○	○	○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X	○	X	X	△	○	△	○	△	○	△	○	X	○	X	○	X	△	X	○	△			X	○	△	○	△	○	△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의 감경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	○	○	○	△	○	△	○	○	○	X	○	X	○	X	○	X	X	○	X	○			△	○	○	○	X	○	△	○	
징계시효 규정(일반 3년, 금품관련 5년)	△	△	△	△	△	△	○	△	△	○	△	○	○	○	△	○	X	○	○	○	○			△	○	○	○	X	○	△	○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 지침	○	○	X	X	X	○	X	○	X	○	X	X	X	X	△	○	X	○	X	○	X			X	○	○	○	○	○	○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참석규정	X	X	X	△	X	○	X	○	X	○	X	○	X	○	X	○	○	○	△	○	○			△	○	X	○	X	○	X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규정	X	X	X	○	X	○	△	○	△	○	X	○	X	△	△	○	△	○	△	○	X			X	○	X	○	X	○	X	X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	○	○	○	○	○	○	○	○	○	△	○	X	○	X	○	△	○	X	○	△			X	○	△	○	△	○	○	○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징계 등 혐의자의 진출권 보장 규정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X	○	○	○	○	○	X	○	X	○	X	○	X	X	X	○	X	X	X	○	X			X	○	X	○	X	○	X	○	
임직원 행동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정, 운용  
 △ : 규정은 설치되어 있지만 보완 필요  
 X : 미제정 또는 설치상태 미흡

### 3) 자체감사의 독립성,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인의 처우 관련 규정

#### □ 감사의 독립성

-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SH공사는 감사규정상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선언적 규정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우수한 감사담당자 확보 및 감사 관련 교육 훈련 실시,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 평가와 성과관리와 같이, 감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두 기관에 불과했음.
- 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조직규모를 확보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다수 있었음.
- 5개 투자기관의 경우 감사담당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감사규정상 두고 있는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복지재단만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음. 근속기간 규정의 내용은 감사기구로의 전보 후 2년의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다수였으며, 농수산물공사만이 예외적으로 3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감사책임자의 이사회 출석은 일견 당연한 사항으로 보이나, 이를 감사규정상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기관도 다수 있었음.
- 감사담당자의 불이익처우 금지는 투자기관의 경우 전원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을 제외한 기관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구분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	농수산	SH	이비면	전기·연	산인진흥	신용보증	세종문화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
감사의 독립원칙	△	○	△	△	△	△	X	X	△	X	△	△	△	○	△
근속보장	○	○	○	○	○	X	X	X	X	X	X	○	X	X	X
감사의 이사회 참여	○	○	X	○	X	X	X	○	X	X	X	X	○	○	X
불이익처우 금지	○	○	○	○	○	○	X	X	X	X	X	○	X	X	X

[표 12] 기관별 감사규정상 감사의 독립성 관련 규정 현황

주 : 감사의 독립원칙 규정 두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미비한 경우 △로 표시

#### □ 감사의 전문성

-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은 대부분 감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감사규정에 두고 있었으나 이를 두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었음.
- 자격규정의 내용으로는 ①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격증(회계 등)을 소지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②기관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자인 경우, ③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가 많았음.
- 다만 감사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은 감사규정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되어, 그 방향성이나 의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상당수의 기관이 감사품질 향상, 감사판단기준의 설정, 감사중점사항 발굴 등 감사실시와 관련된 사항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감사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음.
- 외부 감사기관이나 다른 자체감사기구와의 교차감사 등의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예정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었음. 다른 기관은 같은 사례가 없었음.

-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SH공사는 공사, 용역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음.

구분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	농수산	SH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	신용보증	세종문화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
감사인의 자격	○	○	○	○	○	○	○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	×	×	○	×	×	×
외부전문가 활용	○	○	○	×	○	×	×	○	○	○	○	○	×	×	○
외부기관과의 협력	×	○	○	×	×	×	×	×	×	×	×	×	×	×	×
옴부즈만 제도	×	×	○	×	○	×	×	×	×	×	×	×	×	×	×

[표 13] 기관별 감사규정상 감사의 전문성 관련 규정 현황

□ 감사담당자의 처우

- 감사담당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며, 감사와의 협의 없이 타 부서로 전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으로 나타났음.
- 감사담당자의 근무평점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근무성적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관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시복지재단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기관은 2년의 감사기구 근속 후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를 규정하고 있었음. 감사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확인 결과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음(문화재단).

#### 4) 자체감사 규정 분석 요약

- 서울시감사담당관실의 2013년 8월 규정 설치 현황 조사 이후,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감사규정 개정지침 시달에 맞춰 자체감사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노사협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 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적 규정은 완비된 상태임.
- 다만 서울시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규정은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조직상 독립, 업무상 독립,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원 및 예산 배분, 감사담당자의 신분보장 등 인사상 우대 등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의 2/3에 달하는 10개 기관이 외부전문가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나 일부 기관은 교차 감사나 청렴 옴부즈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시설관리, SH) 내부감사의 품질 향상에 대한 기관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음.

##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

-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정비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다만, 투자, 출연기관의 규모나 인식정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의 상세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각 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으로 잘 반영하고 있음.
- 특히, 투자,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정비와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관실이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나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의 평가제도와 같은 외부평가가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

#### ① 감사 임용 현황

- 자체감사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비상임감사 또는 감사실장의 임용은 상임감사 및 비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되고 있고, 감사실장의 경우에는 투자, 출연기관장의 임명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감사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비상임감사와 감사실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감사경력의 소유자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정당 활동 경력자나 상위단체 공직자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감사실장의 경우 내부 직원이 순환보직형태로 임용되고 있음.

## ② 자체감사업무의 다양화

- 자체감사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업무 이외에 정책적 업무인 청렴의무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자체감사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음.

## ③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 전반적으로 조직편제상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 직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운영상 독립성을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 특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선언적으로 그 당위성을 기관의 규정에 천명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면평가 배제, 감사수당 지급, 순환보직 제한 등을 실행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함.

## ④ 상위감사결과 징계 유지율

- 상위감사결과(감사원, 서울시)에 대한 징계 유지율은 2013년 이후 많은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여전히 상위감사 결과에 대한 양정요구를 감경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표 14] 징계유지율 현황 (2013년~2015년 8월)

구분	[1] 메트로	[2] 도시 철도	[3] 시설 공단	[4] 농수 산	[5] SH 공사	[6] 의료 원	[7] 연구 원	[8] 산업 진흥	[9] 신용 보증	[10] 세종 문화	[11] 여성 재단	[12] 복지 재단	[13] 문화 재단	[14] 시립 교향	[15] 디자인
상위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7	11	16	7	15	27	0	5	29	2		1	15	21	6
상위감사 결과 징계 유지 건수	7	6	7	5	4	27	0	0	17	2		1	15	21	6
상위감사 결과 징계 유지율	100.0	54.5	43.8	71.4	26.7	100.0	0.0	0.0	58.6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위감사 결과 징계 감경 건수	0	5	9	2	11	0	0	5	12	0		0	0	0	0
서울시 감사 결과 징계 감경 건수	0	5	9	2	11	0	0	5	0	0		0	0	0	0
감사원 등 상위기관 징계 감경 건수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세부사항]

<input type="checkbox"/> 서울메트로	서울시 (6건) : 13년 종합감사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경징계 3건 13년 안전관리실태감사 부적정으로 경징계 1건 14년 서울시 직무감찰시 금품 차용 등으로 중징계 1건 감사원(1건) : 14년 직무감찰시 근무지이탈(경마장)로 중징계 1건
<input type="checkbox"/>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위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건수 중 2013년 6건, 2014년 5건 상위감사 결과 징계 유지건수 중 2013년 5건, 2014년 1건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위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건수 : 주의 14건, 경고 4건, 훈계 3건
<input type="checkbox"/>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위기관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건수 총 29건 중 중기청 27건, 감사원 2건 감경된 상위기관 징계는 중기청 12건, 감사원 0건임

## 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정비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투자·출연기관의 규모나 인식정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① 감사 임용상의 문제점

- 자체감사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비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과정에서 인사권자의 의지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특히, 자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의 임용은 각 기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임용된 감사실장은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② 자체감사업무 분장상의 문제점

- 자체감사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업무 이외에 정책적 업무인 청렴의무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자체감사업무와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자체감사업무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음.

#### ③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

- 일반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담보 문제는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상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독립성을 담보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선,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나 비상임감사, 감사실장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용되기 보다는 정치활동을 하거나 상위단체의 퇴직자나 전보자가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한 업무 상 독립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임.

- 두 번째로는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 직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잦은 순환보직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가 어려운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밖에도, 감사업무 담당 직원들의 역량개발 노력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온라인교육에 의존하는 등, 감사역량개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교육훈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사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있음. 특히, 감사담당 직원들의 장기근무와 관련하여 노조가 순환보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근무를 통한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내부인력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전보, 평가, 수당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④ 상위감사결과 징계 유지율

- 상위감사결과의 징계요구에 대해 양정과정에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로의 책임전가와 함께 상위감사기관의 적발위주의 무리한 감사에도 그 원인을 돌리고 있음.



### III. 국내·외 자체감사제도 및 운영사례

#### 1. 국내 자체감사제도 사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 1) 자체감사기구 조직, 인력, 운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동 법에 따라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 1인과 비상임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감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감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실은 상임감사 밑에 두고 있음.
-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118명이었으며, 이는 감사대상 인원(현원 19,274명)의 0.61%로, 감사원 권고기준인 0.8%에 미달하였음. 한국철도공사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73명이었으며, 이는 감사대상 인원(현원 28,967명)의 0.25%로, 역시 권고기준에 크게 미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8명, 5명씩 증가한 수치임.
- 감사기구의 장은 두 기관 모두 공감법 제25조 및 각 기관 정관에 의해 공모 방식을 통해 임명하고 있었음.
- 감사인의 경력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18명의 감사인력 중 지속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61명이었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47.6개월이었음.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73명의 감사인력 중 지속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24명이었고, 감사실 직원의 평균 근무경력은 34.6개월이었음.
  -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5개월 증가한 수치임.

□ 두 기관 모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감사팀장급은 내부통제평가사(ICA) 자격 취득과정을 이수하고 있었고 감사담당자는 감사교육원의 감사전문과정(성과감사반) 등을 수료하고 있었음. 1인당 평균 전문교육 이수시간은 51.2시간이었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감사실장은 민간교육기관의 최고감사인 과정 등을 수료하였고, 감사처장은 감사교육원의 회계기본반을 이수하였으며, 감사담당자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 취득과정 및 감사교육원의 감사전문과정(공공과정반) 등을 수료하였음. 1인당 전문교육 이수시간은 68.2시간이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관리자반’ 등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감사기법 및 착안사안 공유를 위한 ‘감사 자율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였음.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를 추가확보하고 예비감사인 인력 pool을 통해 우수 감사자원을 사전 확보하였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2년에 감사실에 근무한 감사담당자들은 공인회계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등 감사 관련 자격증을 총 17개 보유하고 있었고,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도 182개를 보유하고 있었음.

□ 감사업무협약 체결, 교차감사 등의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 상호 간 교차감사를 실시하였음(감사실시 1회, 파견 1회).
-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등 3개 기관과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2012년에는 대전광역시와 감사인력 2명을 7일간, 서울메트로와 감사인력 2명을 상호 교차감사하는 데 지원하였음.

## 2) 자체감사 규정 점검

### ① 감사의 독립성

-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다음의 4가지 확인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있어 강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①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② 감사결과를 상임감사위원회에 자유로이 보고, ③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 및 예산, ④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인 신분보장 등 인사상 우대방안(감사규정 제6조 3항 각호).
  - 특히 감사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관리부서는 「공기업 및 공사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의 범위 내에서 제6조 3항에 따른 감사실의 예산요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4항)'고 규정하여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구의 규정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대부분 '감사는 직무수행상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예산과 관련하여 우선적 확보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임.
  - 조직상 독립, 보고체계, 예산 확보, 감사인 신분보장 등 감사기구 독립과 관련된 핵심적 사안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감사역이 법인 내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담당자가 기관의 중요 사안을 검토 및 결정하는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은 자체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강화에 유효하므로 타 기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② 감사의 전문성

□ 감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두 기관은 다소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감사인은 ①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예산·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③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감사부서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보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감사규정 제7조의 2 1항 각호).
-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감사인력의 사전 자격요건을 세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대신, 우수 감사인력 발굴 및 이들에 대한 감사교육훈련 등 관련한 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두고 있음. 특히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자체 역량강화 세미나를 정례화 하는 등 내부 교육훈련을 중시하고 있음.

□ 감사인의 전문성 관련, 현재 서울시 5개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전문자격 취득자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반면 출연기관들은 대개 2년 이상의 회계 및 감사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출연기관은 사후적으로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여성재단 등).
- 그러나 이들 출연기관들이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감사인력 충분히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감사담당자의 전문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경력 누적과 자격 취득으로 인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나, 출연기관의 규모 및 인력충원 여건상 강화된 규정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사담당자가 전문자격을 취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역량 확충과 자율적 근속 유도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③ 징계양정 관련

□ 징계 요구시 가중 또는 감면 기준 세분화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가 징계양정을 요구함에 있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 징계양정기준과 별도로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기준과 사유를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징계운영상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고위직 간부나 감사인의 부조리 행위는 징계요양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한국전력공사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8조 1항 7호)

#### □ 인사(징계)위원회의 재량 축소

- 내부감사기관의 징계양정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이 수여하는 개인포창이나 「상훈법」에 의한 포상, 「정부포창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내부감사기구가 요구한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징계운영세칙」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축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한국철도공사 징계운영세칙 제19조 2항).
- 또한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후자의 경우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의결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확보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징계운영세칙 제19조 3항).

#### □ 징계에 대한 세부기준 강화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 중 금품 및 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공금유용,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음주운전, 성매매, 도박 등 사행행위,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음해성 투서·무고·모함·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적시하여 중징계의결 하도록 명시화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횡령·배임·공금유용, 음주운전 등) 내부감사부서의 재량을 축소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징계기준,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징계감경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 기준 준수하며 기관별 관련 규칙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향후에는 내부감사부서 및 인사(징계)위원회의 재량범위를 더 세분화된 규정에 기초해 한정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3) 운영상 벤치마킹 사례

#### □ 예비감사인 인력 pool 제도

-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9월부터 예비감사인 pool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전사를 대상으로 전 업무분야에 대해 실무자급(3, 4 직급)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공모를 시행하여 인력 pool(예비감사인단)을 구성, 감사인력 충원 시 인력 pool에서 우선 선발함.
- 인력 pool 구성은 지원자 중 팀장 2인 이상 추천(1단계)를 받으며, 추천자 중 감사실장이 대상자를 확정함(2단계)
- 실제로 예비감사인 중 2012년에 4명을, 2013년에 3명을 선발하였음.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음.

#### □ 전문성 양성을 위한 ‘자율동아리’ 구성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소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사-사업소 감사부서의 정기 소통채널을 확보
- 동아리는 약 4개월 동안 사무/배전/송변전/토건 및 기타의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음. 1차 활동은 on-line으로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전년도 활동과제 공유, 향후 감사방향 설정 의견수렴, 사업소별 자체 우수감사기법 및 적용방안 공유,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방안 도출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음. 2차 활동은 off-line으로 감사실 주요 현안 공유 및 대외기관 초청 발표 등이 병행되었음.
- 현재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없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별로 감사업무상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됨.

#### □ 내부변호인 제도 시행

- 두 기관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감사결과 지적사항, 관계부서의 이의신청 사항,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실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행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피감사인의 입장을 대변할 내부변호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음(한국전력공사 감사규정 시행규칙 제38조의 1).
- 적용대상은 적극업무면책제도 사안과 감사처분 이의신청 사안임
- 선임대상은 감사대상부서(기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감사결과와 관련된 애로사항 및 문제요인들을 충분히 설명, 변론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선임함.
- 내부변호인은 지정된 안건의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함.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음.

#### □ 교차감사

- 두 기관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감사협약을 체결하여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교차감사는 감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향상과 양 기관 감사부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함.
  - 기관 간 협약 내용에 따라 종합감사(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정보보안감사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교차감사는 기관 내 온정주의를 탈피하여 종사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며, 자체감사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
- ※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간 교차감사를 실시한 사례에서는 직전년도 자체감사(비교차감사) 대비 약 52%의 실적 증가를 보였음.

□ 전산감사의 실시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출된 이례사항에 대하여 전산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 예방적 감사 및 컨설팅의 시행

- 한국철도공사는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활동평가 및 위기관리 진단평가 등에 관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44조).
-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자체감사기구는 감사활동 결과 일정 횟수 이상 적출된 유형을 분석하여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함.
- 또한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의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사 및 계열사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 내부통제 자체평가,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 진단·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45조의 2)



## 2. 해외 자체감사제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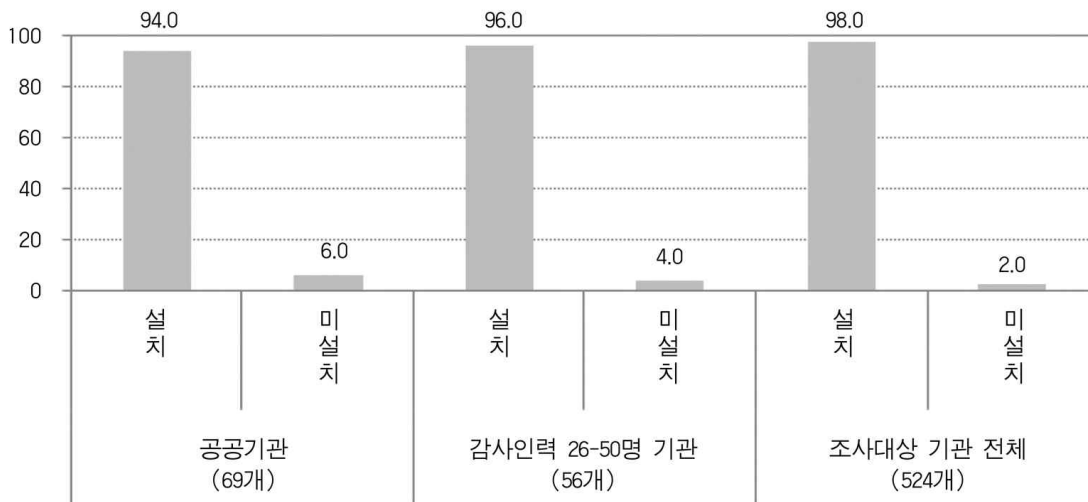
### 1) 해외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 감사연구원은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 국내 및 해외현황분석(2015)”에서 자체감사인협회(IIA)와 Global Internal Audit Survey(2014)의 자료를 분석, 자체감사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① 지배구조

□ 일반적으로 해외 공공부문 조직의 지배구조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두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94%에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8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71%로 높게 나타났고 유럽-중양아시아 지역과 서유럽은 각각 10%와 41%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16 재인용

□ 감사위원회의 주 역할은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의 검토 및 승인, 자체감사기구 장과의 협의 및 성과평가, 연간 재무제표의 검토, 새로운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현행 절차에서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 여부의 검토임.

- 다만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조언, 권고 등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반면,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 중 감사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음.

## ② 자체감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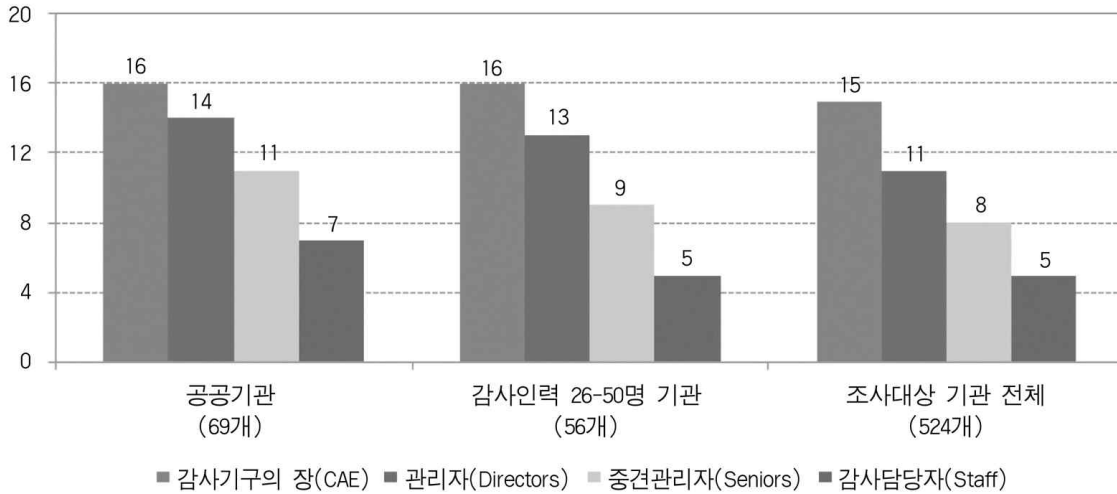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 구성 및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은 0.22%로, 감사대상 인원 대비 0.8% 비율을 권고하고 있는 한국의 감사원 기준보다 적은 수의 감사인력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

구분	감사인력 구성						감사인력 비율	
	총원	감사기구장	관리자	중견관리자	감사담당자	행정서무	1인당직원수	비율
공공기관(69)	14	1	2	5	5	1	447	0.22
감사인력 26~50명(56)	37	1	7	13	14	2	856	0.12
조사대상 기관 전체(524)	26	1	4	9	11	1	764	0.13

[표 15]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 구성 및 비율

(단위: 명, %)

□ 감사담당자의 감사근무경력은 개인별 5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7년으로, 타 유형 기관보다 감사담당자의 경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감사담당자 등의 감사경력 현황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16 재인용

### ③ 감사담당자 현황

- 감사담당자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감사기준(GAGAS)에서는 2년에 최소 8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우리나라 감사원이 권고하는 교육시간은 40시간임), 공공기관의 평균 교육시간은 권고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담당자의 감사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8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자격증은 공인자체감사사(CIA) 등 자체감사 관련 자격증과 공인회계사(CPA) 등 공공회계 관련 자격증, 그리고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7).

구분	자격증 보유자 비율	자격증 유형								
		자체 감사 (CIA)	정보 시스템 감사 (CISA)	정부 감사 (CGAP)	공공 회계 (CPA 등)	관리 일반 회계 (CMBA 등)	비리 조사 (CFE)	통제 평가 (CCSA)	재무 분석 (CFA)	기타
공공기관 (69)	81	46	33	17	37	28	23	18	12	35
감사인력 26~50명 (56)	69	21	22	4	31	11	10	7	4	26
조사대상 기관 전체 (524)	75	35	26	14	41	19	18	16	9	28

[표 16] 감사담당자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주 : 복수 응답에 의한 비율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23 재인용

#### ④ 자체감사 활동

자체감사 활동 및 업무를 살펴보면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17).

- 전문적 자문서비스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 교육훈련, 내부통제 자가평가 제공, 조직의 전략과 성과 간 연계 검토 등임.
- 다만 조직 변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로 자체감사기구를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합법성 감사의 경우 규정 및 절차요소에 대한 감사(80%), 부정 및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사(66%), 보안평가 및 조사(46%)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8).
-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운영감사, 통제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평가, 재무리스크에 대한 감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체감사 유형	비율
합법성 감사	92%
성과 감사	96%
감사영역에 대한 의견 제시	84%
자문 서비스 제공	70%
지배구조, 위험관리, 내부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증	69%

[표 17] 자체감사 활동 유형

주 : 복수 응답에 의한 비율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23 재인용

합법성 감사 세부유형	비율
규정 준수여부 감사	80%
부정·부적정 사항 조사	66%
보안평가 및 조사	46%
재난복구 점검 및 지원	33%
아웃소싱 운영에 대한 감사	28%
품질/국제표준(ISO) 감사	22%
사회적 책임 관련 감사	18%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점검	14%

[표 18] 합법성 감사 수행 현황

주 : 복수 응답에 의한 비율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23 재인용

성과감사 세부유형	비율
운영감사	88%
통제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평가	67%
재무리스크에 대한 감사	65%
IT/ICT 리스크에 대한 감사	57%
정보리스크에 대한 감사	56%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	56%
관리 감사	54%
사업실행가능성 평가	22%

[표 19] 성과감사 수행 현황

주 : 복수 응답에 의한 비율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23 재인용

⑤ 감사결과 이행 및 감사성과 모니터링

- 거의 모든 자체감사기구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 주기는 다소 차이가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55%는 일상적으로, 42%는 가끔 점검을 하고 있었음.
- 감사성과는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투입(input), 과정(process), 결과(output)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미함. 구체적인 측정방식으로는 감사계획 대비 달성율, 감사결과 권고사항 이행률, 감사대상 부서의 만족도 결과, 감사기간의 적정성, 유의미한 감사결과의 수, 예산대비 감사소요 시간 등이 활용되고 있었음(표 21).

성과측정 방법 유형	비율
감사계획 달성률	56%
감사결과 권고사항 이행률	55%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인 설문	42%
감사위원회, 내부관리자 피드백 또는 설문	4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건전성 보증 정도	33%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감사자의 신뢰 정도	32%
감사완료 시기(감사기간)의 적정성	31%
유의미한 감사결과의 수	30%
의무 감사범위 이행완료율	27%
예산대비 실제 감사소요시간	26%
감사결과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비용절감	21%
총 감사기간	20%
공식적 측정 안함	21%

[표 20] 자체감사 성과측정 방법

주 : 복수 응답에 의한 비율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 감사연구원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p.123 재인용

## 2) 미국 공공부문 감사체계

- 미국의 감사체계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와 함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county, city, town, village 등)의 감사로 구분됨
  - 연방정부의 내부감사는 감찰관(Inspector General, IG)이 담당하며, 현재 72개 연방기관에 설치되어 있음.
  - 주정부의 내부감사 역시 연방정부와 유사하게 주정부 감찰관실(Office of State Inspector General: OSIG) 등에서 담당함.
  
- 연방 정부기관의 감찰관은 상원의 인준(confirmation)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나, 연방 공공기관의 감찰관은 기관장이 임명함
  
- 임명권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찰관은 기관장(장관)의 일반적인 감독(general supervision) 하에 놓여 있음. 소속은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거나 부기관장 하의 타 부서와 동일하게 설치되는 등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기관장의 감독은 감찰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audit) 및 조사(investigations)를 방해할 수 없음. 감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연방 감사원장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감찰관의 의무는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상의 낭비·비리·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나 조정을 행하는 것임.
  - 감찰관실은 이러한 감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를 말함.
  - 감사관은 감사 및 조사의 시작·수행·완료와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며, 기관장이 비록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감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는 없음.
  - 감찰관은 감사 및 조사를 위한 부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옴부즈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고서, 서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소환장(subpoena)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과, 자료 미제출시 법원의 명령을 통한 집행권한을 보유함.
- 감찰관실은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나 그 수정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장과 의회에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3) 미국 지방정부(City) 감사체계 : 뉴욕 시의 경우

- 뉴욕 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시 감사관 (Comptroller)과, 이와 별도로 시장에 소속된 조사부 (Department of Investigation) 및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를 두고 있음.
- 뉴욕 시 감사관(Comptroller)은 주민 직선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시장과 대등한 관계인 최고재무관리자(Chief Financial Officer)이며 임기는 4년 임.
  - 감사관은 시의 재무건전성과 효과적인 성과달성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함.
  - 감사관의 감사 대상은 뉴욕 시의 모든 기관과 5개 공적연금 수탁자임.
  - 감사관은 시의 수입·지출·거래에 대한 재무감사 및 자금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운영감사를 실시하며, 뉴욕 시 헌장 제93조에 의해 최소 4년마다 모든 뉴욕 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
  - 감사관실은 회계국, 행정국, 자산관리국, 회계감사국, 예산국, 계약행정국, 경제개발국, 엔지니어링국, 정보시스템국, 노동법률국, 법률조정국, 공공문제국, 공공재무국, 공공정책국 등 다수의 하부기관을 두고 760여 명에 달하는 각계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감사관(Comptroller)의 역할에 대해, 외부감사기구로 보는 입장과 (박희정·허명순, 2009, “공공감사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내부감사체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자체감사기구로 보는 입장이(염차배·진상기, 2011, “지방정부감사론”, 서울: 법문사) 대립하고 있음.



- 감사관실과 별도로, 뉴욕 시는 시장 휘하에 일반부서로 조사부(Department of Investigation)을 두고 있음. 뉴욕 시 조사부는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부패와 비리방지, 잠재적 부패위험 식별 등 주로 반부패 'watchdog' 역할을 수행함.
  - 뉴욕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조사국장(DOI Commissioner)을 비롯한 조사부의 구성원을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음.
  - 주 임무는 뉴욕 시 공무원과 뉴욕 시와 사업을 하거나 뉴욕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패 및 비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기소임.
  - 조사부는 조사 시 증인의 출석 강제, 증거 수집, 청문 등의 권한을 보유함.
  - 조사부는 뉴욕 시의 각 부서별 내부감찰관에 대한 임명 승인 권한을 보유하며, 이들의 감사활동 수행기준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 권한을 보유함.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뉴욕 시 감사관, 조사부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장, 감사관, 시민대표, 그리고 시장이 지명한 4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됨.
  -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의 권한 정지 및 회수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시 회계에 대한 연례 감사(annual audit)를 수행할 공공회계법인의 선정, 연례적 감사의 조사영역·수행 절차·평가 결과 평가, 시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보험회계감사(actuarial audit) 수행자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보유함.

### 3. 사례연구의 시사점

#### 1) 자체감사기구 설치 규정 의무화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경우, 자체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화 되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원의 0.8%를 자체감사인력의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평균 자체감사인력의 경우, 전체 인력의 0.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2) 자체감사기구의 지배구조

-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최근의 경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제 형태인 감사위원회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전력공사 및 미국의 경우, 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 도입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서울시 역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지배구조가 독립제 집행기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재편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음.
- 하지만,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설정되어져 있음.
- 미국의 경우,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주로 자체감사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 등과 같은 지원적 자문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의 및 의결기구까지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3)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명방식

-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공모직이나 선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임감사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감사기구인 시 감사관(Comptroller)은 주민들의 직선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4) 자체감사 직원의 역량강화

-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체감사 전담직원들의 근무경력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평균 근무경력이 47.6개월인 반면, 미국의 경우, 평균 5년에서 7년의 감사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 감사업무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 자체감사 직원의 전문성과 감사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감사 전담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감사관련 교육을 위해 사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자체감사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인당 평균 51.2 시간의 전문교육이수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감사담당자 교육과 관련하여 2년에 최소 8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 감사원은 감사담당자에 대해 교육시간은 1년에 40시간 이상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IV.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1. 단기안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규정의 내실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 감사관실의 Checklist 및 자체감사제도 제도화에 대한 청렴위원회의 평가로 많은 개선을 가져 왔으나, 자체감사와 관련된 세부내용들을 내실 있게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각 기관별로 항목별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관련 규정을 보다 내실화하여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자체감사제도 내실화와 관련하여 1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별 규정 정비내용을 정리하면 <표 22>, <표 23>과 같음.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징계규정이나 징계시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디자인재단 등은 징계규정,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지침, 징계의결정족수 관리 규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관련 규정을 보다 내실 있게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2년으로 하자는 노동조합의 의견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지만,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여 투자·출연기관의 징계시효 규정을 일반 3년, 금품관련 5년으로 징계시효를 의무화함으로써 징계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확히 하여 자체예방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감사결과를 양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제도의 운영방식 개선방안 부분에 기술된 내용 참조 요망.

기관명	투자기관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		SH공사	
변경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징계기준	△	○	△	○	△	○	△	○	△	○
강등 중 징계 규정	X	○	○	○	X	○	○	○	○	○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X	○	X	X	△	○	△	○	△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	○	○	○	○	○	○	○	○
징계의 감경기준	△	○	△	○	△	○	△	○	○	○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 규정	△	○	△	○	△	○	△	○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	○	△	○	△	△	△	○	△	○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	○	○	○	△	○	△	○	○	○
징계시효 규정(일반 3년, 금품관련 5년)	△	△	△	△	△	△	○	△	△	○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 지침	○	○	X	X	X	○	X	○	X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참석규정	X	X	X	△	X	○	X	○	X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규정	X	X	X	○	X	○	△	○	△	○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	○	○	○	○	○	○	○	○	○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	○	○	○	○	○	○	○	○	○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규정	○	○	△	○	△	○	△	○	△	○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X	○	○	○	○	○	X	○	X	○
임직원 행동강령	○	○	○	○	○	○	○	○	○	○

[표 21] 서울시 투자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규정 내실화 방안

기관명	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		신용보증		세종문화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재단	
변경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강등 등 징계 규정	○	○	X	○	○	○	X	X	X	○	○		X	○	X	○	X	○	○	○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	○	X	○	X	○	X	△	X	○	△		X	○	△	○	△	○	△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	○	○	○	○	○	○	○	○	○		○	○	○	○	○	○	○	○
징계의 감경기준	△	○	△	○	△	○	△	△	△	○	△		△	○	△	○	△	○	○	○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봉급 등 제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	○	X	○	△	○	△	○	△	○	△		△	○	△	○	△	△	△	△
비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X	○	X	○	X	○	X	X	○	X	○		△	○	○	○	X	○	△	○
징계시효 규정 (일반 3년, 금품관련 5년)	△	○	○	○	△	○	X	○	○	○	○		△	○	○	○	X	○	△	○
징계시효 경과자 관리 지침	X	X	X	X	△	○	X	○	X	○	X		X	○	○	○	○	○	○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참석규정	X	○	X	○	X	○	○	○	△	○	○		△	○	X	○	X	○	X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규정	X	○	X	△	△	○	△	○	△	○	X		X	○	X	○	X	○	X	X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	○	X	○	X	○	△	○	X	○	△		X	○	△	○	△	○	○	○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	○	△	○	△	○	○	○	△	△	△		△	○	○	○	△	○	○	X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규정	△	○	○	○	△	○	X	○	△	△	○		△	○	○	○	○	○	△	△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	X	○	X	X	X	○	X	X	X	○	X		X	○	X	○	X	○	X	○
임직원 행동강령	△	○	△	○	△	○	△	○	○	○	△	○	○	○	△	○	○	○	○	△

[표 22] 서울시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 규정 내실화 방안

##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1)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 임용절차 개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임용절차 개선이 필수적임.

- 상임감사의 임용방법 개선 : 개방형 임용을 통한 공개경쟁 채용을 의무화하

되, 감사업무 경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감사업무 관련 경험을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상임감사 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임감사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현재의 시장 3인, 해당기관 3인, 시의회 3인의 추천방식에서 “상임감사추천위원 Pool제”로 전환함으로써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인 상임감사추천시스템 도입 필요.

- 감사실장 임용방법 : 현재 외부공모로 선발되는 상임감사를 보좌하기 위해 내부직원 중 임용되고 있는 감사실장의 경우, 현재 내부임용에서 내·외부 공개채용으로 전환. 기관의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관계로 감사실장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이나 상임감사의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부직원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상임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복수의 내부 감사실장을 추천하여 상임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임감사가 내부의 직원 중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의 개방성 확대

-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 기법이나 인력운영 등에 외부의 전문가나 민간경력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체감사제도 운영방식 개선 필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인적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관에 이르기까지 자체감사 시, 외부의 전문가나 민간경력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제도의 개방적 운용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에 (가칭) “시민감사관제”를 도입, 운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 교차감사방식 도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 자체감사 기법의 공유나 감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과 함께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관의 규모나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기관 간, 출연기관 간, 혹은 투자·출연기관 간에 교차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문적인 자체감사가 곤란한 소규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간 교차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함께 감사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차감사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차감사 도입을 모색하는 경우, 출연기관 간 유착을 예방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기관 간 교차감사기관을 달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제고

#### (1)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자격요건 강화

- 자체감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는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자격요건 강화: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적어도 최소 3년 이상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채용과정에서 심층면접을 신설하고 평가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적합성과 전문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감사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감사인력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보수 및 인센티브 등 우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자체감사제도의 성과는 내부 직원 중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의 확보가 관건인 만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구성원들이 관리직 승진이나 상위직 승진을 위한 필수 경력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관리직 승진이나 상위직 승진 후에 일정기간(최소 3년)을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화 필요.



- 특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순환보직이 갖은 보직관리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평균 5년 정도를 근무케 함으로써 순환보직 예외 직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감사관실 직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상임감사나 감사실장의 동의를 필수요건화 할 필요가 있음.
- 감사관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이외에 감사수당을 현실화, 구체화함으로써 감사관실로의 유입을 독려하고 자체감사업무에 대한 겸직금지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4) 상위감사기관의 징계 유지율 유지방안

##### (1)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감사결과에 대해 양정을 심사,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
- 내부인사와 외부인사가 50:50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로 100% 구성하되,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배심원제 형태로 운영.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감사자, 피 감사자가 출석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설명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환 필요.

##### (2) 컨설팅이나 예방감사로의 자체감사의 페러다임 전환

- 합법성 중심의 적발위주의 상위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이나 예방감사로 전환함으로써 자체감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율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대응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의 페러다임 전환 필요.

## 5)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의 의지 강화

□ 자체감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의 의지 강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자체감사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자체감사제도가 기관에 가져오는 예방적 기능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되, 자체감사제도의 내실화 이행실적을 평가제도와 연동하는 방안 필요.

### (2) 감사사례 공유기회 마련

□ 자체감사제도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서울시 감사관실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학습기회 마련과 함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내실화 방향	개선방안
1)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① 자체감사제도 규정의 내실화 (*표 21, 표 22 참조 요망)
2) 독립성 강화	①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 임용절차 개선 ② 자체감사의 개방성 확대 ③ 교차감사방식 도입
3) 전문성 제고	①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 자격요건 강화 ② 감사직원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운영
4) 상위감사기관 징계유지율 유지방안	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획기적 개선 ② 컨설팅이나 예방감사로의 페러다임 전환
5) 운영개선방안	① 기관장의 의지 강화 ② 감사사례 공유기회 마련

[표 23] 자체감사제도 내실화 방안 : 단기안

## 2. 중·장기안

###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1) 자체감사제도 관련 조례제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자체감사제도 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성북구 의 자체감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첨 1> 참조 요망.

##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위원회 도입,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제도의 방향 및 운영방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위원회”를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하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보다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역량을 보조, 지원, 육성하는 자문기구의 역할 수행.

###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담 자체감사기구 도입,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인력이 현재 170여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인력을 적극 활용, 중·장기적으로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대한 감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감사관실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강화

### (1) 감사직렬 신설

- 서울시 감사관실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부터 보직관리 및 승진 등 감사인력 간 순환이 가능하도록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4)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상시적인 자체감사와 함께 자체감사를 위한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 활용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자체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e-청렴시스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시정과 청렴시정 구현 수단으로 활용.

내실화 방향	개선방안
1)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① 자체감사제도 관련 서울시 조례제정
2) 독립성 강화	① 투자·출연기관 전담 감사위원회 도입, 운영 ② 투자·출연기관 전담 자체감사기구 도입, 운영
3) 전문성 제고	① 서울시 감사직렬 신설
4) 운영개선방안	①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표 24] 자체감사제도 내실화 방안 : 중·장기안



## 〈 참고 문헌 〉

### ■ 연구보고서

- 박희정·허명순(2009), “자체감사 내실운영을 위한 감사원의 지원방향”, 「Executive Report (2009-11)」, 감사연구원.
- 유승현(2014), “공공부문 자체감사인력의 감사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3(1): 125-159.
- 조형석·신민철(2015),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 감사연구원
- 조형석·류숙원(2013), “자체감사 운영 벤치마킹 사례조사”, 감사연구원
- 조형석·류숙원(2014),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역량수준 변화 분석: 법률 시행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125-154.
- 조형석·방동희(2010), “자체감사기구 운영컨설팅 방안”, 감사연구원
- 허명순·방동희(2010), “공공감사기준 체계와 제정방향”, 「Executive Report(2010-04)」, 감사연구원
- 허명순·차경엽(201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 감사연구원
- 한국인사행정학회(2013),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직원의 전문성·독립성 확충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감사직렬 제도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 ■ 감사결과보고서

- “201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감사원
- “감사결과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2015. 2.)

## ■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https://www.cleaney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s://www.seoulmetro.co.kr/>)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s://www.smrt.co.kr/>)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https://www.garak.co.kr/>)

SH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c.or.kr/>)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si.re.kr/>)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sejongpac.or.kr/>)

서울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women.or.kr/>)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phil.or.kr/>)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design.or.kr/>)

## ■ 기타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 취지문”



〈별첨 1〉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장은(이하 "기관장"이라고 한다) 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자체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장 일반기준

**제6조(독립성)** ① 기관장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시민감사관제 등 민간 감사 역량 활용

7.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기관장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1년에 40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자체감사의 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

**제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조정)** 기관장은 제9조의 연간감사계획과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기구의 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3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제4장 자체감사의 실시

**제14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관장

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감사결과와 처리

**제19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기관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인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기관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자체감사결과와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적극행정 면책)** ① 기관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2조(표창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자체감사결과와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4조(이행결과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의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자체감사정보 관리)** ① 서울특별시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자체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기관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에게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 및 관련 분야 과장급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자체감사담당자

**제29조(자체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기관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



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자체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서울특별시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32조(서울특별시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는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33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15년 11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한문철

편집인 : 입법담당관(지영림, 김용원 주무관)

행정자치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신정희 조사관)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 3705-1181, FAX) 02. 3705-1486(입법담당관)

전화) 02. 3705-1342, FAX) 02. 3705-1393(행정자치위원회)

연구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책임연구 : 최근희(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연락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21세기관 403호

전화) 02. 6490-5658

---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052-01

-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으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법담당관실에는 중요조례안 관련 공청회 예산과 전문가활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